덕은한강초등학교

가 정 통 신 문

http://www.deokeunhanriver.es.kr

제2022-001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산로 55
☎ 031)969-9782~6
담당부서 교무기획부

2022학년도 덕은한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가을 하늘 푸르름이 짙어만 가는 시절입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덕은한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1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입후보 자격

1)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장소 : 덕은한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원흥초교 4층)
다. 기간 : **9월 7일(수) 10:00~9월 15일(목) 15:00 까지**
라. 구비 서류 및 제출 방법
1) 구비 서류
가)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2) 제출 방법
가) 덕은한강초교 임시 교무실(원흥초교 4층) 방문 제출(※방문 작성 가능)
나) 양식 출력 :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e알리미 첨부파일 활용

2. 학부모위원 선거

가. 선거 방법 :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시스템(K-voting)에 접속하여 직접 투표
나. 선거 일시 : 2022년 9월 20일(화) 10:00~15:00
다. 학부모 위원 정수 : 2명(※후보자가 정수 이내일 경우 무투표 당선)
라. 후보자 소견 발표 :
1) 발표 방법 : 선거공보로 대체
2) 선거공보 발표 일시 : 9월 16일 10:00
3) 발표 방법 : 본교 홈페이지 및 e알리미를 통해 발표

3. 당선자 공고 :
가. 공고 일시 : 9월 20일(화) 17:00
나. 공고 방법 : 본교 홈페이지 및 e알리미를 통해 공고

2022년 9월 7일

덕은한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